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1. 14 선고 2017가단23089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0. 9. 3 선고 2020나50348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1. 14 선고 2017가단23089 판결

전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경남

변론 종결 2019. 10. 17

판결 선고 2019. 11. 1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하남시 D 임야 84,997㎡ 증가. 별지 감정도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63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부분 608㎡를 인도하고,나. 별지 감정도 73, 74, 75, 76, 73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ㄷ' 부분 하우스(건물) 99㎡를 철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12. E종중으로부터 하남시 D 임야 84,997㎡(이하, '이 사건 부동 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그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63을 순차 연결한 선내 '기' 부분 6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별지 감정도 73, 74, 75, 76, 73을 순차 연결한 선내 노,부분 하우스(건물) 9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여 위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2, 3호증의 각 기재,감정인의 F의 감정결과,변론 전체의 취지

2.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는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E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사용하고있는데, 아직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피고가 E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결론

따라서,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구광현

별지